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999. 5. 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- 제안 : 1999년 4월 29일 제출
- 회부 : 1999년 4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 향상,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1998.2.24 법률 제5516호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가.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과, 초·중·고·특수 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,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(안 제2조)
- 나.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(안 제3조)
- 다.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도록 하고, 설립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,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(안 제4조)

- 라.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마.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 한 것으로 봄 (안 제6조)
- 바.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이내로 구성도록 하고, 직종별·직급별·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(안 제8조)
- 사.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아.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(안 제13조 내지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향상,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